

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50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춘곤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문성호,
민병주, 유만희, 윤기섭,
윤종복, 이성배, 이종환,
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
허·훈, 홍국표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은 공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로서,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보가 요구됨.
-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시의회의 정책적 견제·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, 위원 및 위원장 임기 규정으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경직성과 장기 재직에 따른 폐쇄성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.
- 이에 국가유산 관련 정책 심의 과정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.
- 아울러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, 위원장의 임기를 1년 단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순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, 특정 인사의 장기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 (안 제37조 제3항 제5호)
- 나. 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 삭제(안 제37조 제4항)
- 다.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(안 제39조 제4항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하고, 두 차례만”을 “하고,”로, “있다”를 “없다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5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

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<u>두 차례만</u> 연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보궐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제3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7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</u></p> <p>④ ----- 하 고, ----- 없다.</p> <p>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제3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없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조(위원회의 구성)제3항의 위원 임명 대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추가하고 제4항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며, 제39조(위원장의 직무)에서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, 이는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